

의안검토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4. 27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로붙임
4. 검토의견 : 따로붙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5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연정수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및 「환경영향평가법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인용법령을 정비함(안 제1조).

나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위해 규정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.

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안 제1조에서는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으로의 개정과, 여객·화물자동차 과징금 세입을 운수사업기금에서 운용하게 됨에 따라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은 관계법령 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져 삭제하였습니다.

- 안 제2조에서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,
- 안 제3조의 세출 대상사업 중 제6호의 대중교통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은 운수사업기금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삭제 하고,
-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변동내용이 없으며, 기존 조례에 명시 하였던 시행규칙은 운용에 따른 필요성이 없어 삭제, 정비 하였습니다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면서 기존 조례의 실효성 없는 조문과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도모코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.